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9. 23.(목) / 총 5매(본문4, 참고1)	
담당 부서	공항안전 환경과	담당 자	·과장 윤성배, 사무관 박권필, 주무관 박응민 ·☎ (044) 201-4342, 4341
보 도 일 시		2021년 9월 2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3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공항, 소음은 낮추고 지원은 높여 지역과 상생발전

- 선제적 소음관리 · 다양한 주민 지원사업 담은 개선방안 마련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,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“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(이하 ‘개선방안’)”이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항공정책위원회(위원장 국토부장관) 심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선방안은 「공항소음방지법」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*에 적용되며,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.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 김포·인천·제주·김해·울산·여수공항

①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관리

- (신규) 먼저,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2022년까지 수립하고, 5년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완하여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.
- (신규) 또한,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,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한다.

② 주민 수요에 맞춘 소음대책 지원사업 추진

- (기존)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은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,
(개선) 앞으로는 주민들의 선택권과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*으로 개편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.

*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·TV수신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고, 방음시설은 주민이 취향에 맞게 우선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

- (기존)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해당 지자체 등에서 약 100억원 규모로 시행하여 왔으나,
(개선) 주민 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, 사업규모도 2030년까지 약 200억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③ 투명한 소음정보 제공 및 주민 편의 증진

- (기존) 국토부와 환경부가 관리하던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 측정망 데이터를 나누어 관리하였으나,
(개선) 2023년까지 양 부처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, 항적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한다.
- (신규) 또한, 공항운영자 등이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서 매수한 건물과 토지를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원, 공동주차장, 창업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.

④ 지속가능한 소음 관리 추진체계 개편

- (기존) 현재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는 지자체 등에서 신청한 주민 지원사업의 단순 심의역할만 수행하였으나,
(개선) 향후 가칭 “상생발전위원회”로 개편하여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등 소음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.

- 또한, 저소음 항공기 운항을 유도하고, 야간·심야시간 운항을 제한 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2022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간다.
 - (기존)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눠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~25%를 납부하고 있으나,
(개선) 소음등급을 약 8~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약 5~50%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.

 - (기존) 아울러, 현재 심야시간(23:00~06:00)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소음부담금을 주간 대비 2배를 부과하고 있으나,
(개선) 야간시간(19:00~23:00)과 심야시간에는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하여 소음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.

- (신규) 공항운영자가 지역주민의 취업 지원과 지역기업의 공사 및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,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항 주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 - (신규) 이와 함께, 공항운영자 간 해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교류 확대와 공항운영자의 소음피해대책 지역 전담조직을 강화하고, 한국교통연구원 내 설치되어 있는 소음분석센터의 조사·연구 기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-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“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,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안전 환경과 박권필 사무관(☎ 044-201-4342), 박응민 주무관(☎ 044-201-4342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추진배경

- (현황) 「공항소음방지법」 제정('10.9) 이후 소음대책사업* 및 주민지원사업**을 추진 중이나, 주민 만족도가 낮고 소음피해 민원 지속 발생

*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, 전기료·TV수신료 지원 등('21년 471억원)

** 도서관·공원 설치, 공동작업장 설치 등 소득 증대사업('21년 100억원)

- (필요성) 현재의 소음대책을 진단하고, 공항과 지역주민의 상생 발전 및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
□ 주요내용

- ① (선제적 소음관리) 공항별 소음 관리목표 설정*·관리, 항공기 저소음 운항절차 개선**,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

* 공항별로 30년 단위의 소음 관리계획을 설정하고, 5년마다 성과 평가

** 저소음 항공기 도입 시 인센티브 제공, 저소음 운항절차 추가 개발 등

- ② (수요 맞춤형 대책) 시설(방음, 냉방) 설치 → 현금·실비 지원방식* 전환 검토, 주민지원사업 공모방식 도입, 지역발전사업 연계 추진

* 냉방시설, 전기료, TV수신료 등은 주변지역 설치 지연 등을 감안 현금 지원, 방음시설은 다양한 시설 요구, 재설치 등을 감안 주민 설치 후 실비 지원

- ③ (주민 편의증진) 소음 측정망 데이터 통합* 관리, 소음·운항정보 공개, 공항 주변 유희부지 활용

* 국토부(4개 공항 55개소), 환경부(14개 공항 90개소) 운영중

- ④ (관리체계 개편) 소음등급 세분화* 및 소음부담금 편차 확대, 소음 대책위원회 기능 강화, 공항운영자 책임성 강화**

* 예) 現 5단계 → 8~15단계, 편차를 現 착륙료의 10~25% → 5~50%로 확대

** 주민 일자리 창출, 지역기업 우대, 소음관리 조직 강화, 해외 선진사례 도입 등